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 보고서

2014. 9. 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4년 9월 3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24일
- 다. 상정일자 : 제190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위원회(2014. 9. 25)
제190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위원회(2014. 9. 26)
제190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위원회(2014. 9. 2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양 재 연

가. 제안이유

-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사항을 관련법규 및 지정된 기준에 의하여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마포구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마포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나. 제출내역

-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 결산검사의견서
- 재무보고서
- 결산증빙자료(결산서에 포함)
- 예비비 지출(결산서에 포함)
- 기금 결산(결산서에 포함)

다. 주요내용

(1)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내역

- 예산현액 436,512,109,150원(전년도 이월금 3,201,065,150원을 포함)
- 수납액 444,083,354,942원
- 지출액 347,871,683,747원
- 차인잔액 96,211,671,195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 이월함.
- 다음연도 이월액중
 - 명 시 이 월 4,223,380,490원
 - 사 고 이 월 9,919,457,075원
 - 보조금집행잔액 4,239,176,4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7,829,657,210원임

(2)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내역

- 예산현액 370,035,899,150원 (전년도 이월금 3,201,065,150원을 포함)
- 수납액 376,479,087,311원
- 지출액 333,488,548,029원
- 그 차인잔액 42,990,539,282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함.
- 다음연도 이월액중
 - 명 시 이 월 4,223,380,490원
 - 사 고 이 월 9,919,457,075원
 - 보조금집행잔액 4,127,889,3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719,812,367원임.

(3) 2013회계연도 3개 특별회계 내역

(가) 총괄 결산상황

- 예산현액 66,476,210,000원 (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
- 수납액 67,604,267,631원

- 지출액 14,383,135,718원
- 차인잔액 53,221,131,913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 이월함.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
 - 명 시 이 월 0원
 - 사 고 이 월 0원
 - 보조금집행잔액 111,287,0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109,844,843원임

(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내역

- 예산현액 460,704,000원
- 수납액 419,147,003원
- 지출액 378,479,993원
- 차인잔액 40,667,01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함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보조금집행잔액 11,963,8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703,180원임

(다) 주차장 특별회계 내역

- 예산현액 60,741,175,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
- 수납액 59,469,803,510원
- 지출액 9,600,609,010원
- 그 차인잔액은 49,869,194,50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함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 시 이 월 0원
 - 사 고 이 월 0원
 - 보조금집행잔액 99,323,2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769,871,260원임

(라)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내역

- 예산현액 5,274,331,000원
- 수납액 7,715,317,118원
- 지출액 4,404,046,715원
- 그 차인잔액은 3,311,270,403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함

(4) 2013회계연도 예비비 내역

-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016,876,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694,750,450원을 지출하고 119,47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02,647,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

(5) 2013회계연도 기금 15종 내역

- 전년도말 조성액은 37,593,492,484원
- 당해연도 조성액은 10,736,481,436원
- 당해연도 사용액은 18,701,391,362원
그 차인잔액은 29,628,582,558원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상 수]

(1) 일반회계 세입 결산

(가) 마포구 세입 구성 현황

- 구 전체 세입은 4,440억 8,335만 4,942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입은 84.8%인 3,764억 7,908만 7,311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15.2%인 676억 426만 7,631원임.
 - 전년 대비 마포구 전체 세입은 578억 9,886만 4,757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513억 3,885만 7,794원, 특별회계는 65억 6,000만 6,963원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 세입은 보조금이 37.2%인 1,399억 2,500만 1,890원으로 가장 많고, 세외수입이 862억 4,195만 7,281원(22.9%), 지방세 수입이 808억 2,106만 4,590원(21.5%),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이 634억 7,940만 550원(16.9%), 지방교부세가 60억 1,166만 3천원(1.6%)로 가장 적음.

◆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

(단위 : 원)

합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376,479,087,311 (100%)	80,821,064,590 (21.5%)	86,241,957,281 (22.9%)	6,011,663,000 (1.6%)	63,479,400,550 (16.9%)	139,925,001,890 (37.2%)

(나) 세입예산 미편성 후 징수결정 및 수납

- 당초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음에도 29억 7,785만 4,110원을 징수 결정하여 25억 6,953만 1,220원의 수납액이 발생하였는 바, 향후 세입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추계로 세입 예산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세입 미편성 후 수납 현황

(단위 : 원)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0	2,977,854,110	2,569,531,220	408,322,890

(다) 체납세액 징수

- 지방세의 지난년도 수입 징수율이 2012회계연도 39.2%에서 2013회계 연도는 43.6%로 4.4% 상승하였고, 세외수입의 지난년도 수입은 14.0%에서 17.2%로 3.2% 상승하는 등 체납액 징수율은 전년도에 비하여 상승하였음.
- 최근 세월호 참사 등에 따른 경기의 하락으로 세수가 감소하여 구 재정 운영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고액·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지난년도 수입 전년 대비 비교

(단위 : 천원)

지난년도 수입	2012회계연도			2013회계연도			징수율 증감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자영세	1,306,104	512,180	39.2%	1,520,281	663,541	43.6%	4.4%
세외수입	25,272,665	3,537,139	14.0%	23,969,963	4,111,979	17.2%	3.2%

(2) 일반회계 세출 결산

(가) 세출예산 집행율

-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율은 90.1%로 전년도 92.7% 대비 2.6% 하락하여 224억 451만 3,556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 특히 10개 부서에서 29억 6,503만 4,798원이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12개 부서의 24개 사업은 집행율이 50% 미만으로 저조하며, 4개 사업 1억 1,142만 9,000원은 전액 불용처리 되었음.
- 집행잔액은 사업부서의 특성상 낙찰차액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으나 일부는 특별한 사유없이 불용율이 높게 나타난 바, 이는 사업의 부진 또는 예산 과다 편성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일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은 매년 반복적으로 높게 불용되고 있음에도 예년과 같은 수준의 예산을 관행적으로 편성하고 있음.
- 이와같은 높은 불용율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불용액 비중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 시 보다 치밀한 사업검토와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하게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등 세출예산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세출 전년 대비 비교

(단위 : 원)

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율
2013년	370,035,899,150	333,488,548,029	14,142,837,565	22,404,513,556	90.1%
2012년	316,374,866,250	293,248,775,409	3,201,065,150	19,925,025,691	92.7%
증감	53,661,032,900	40,239,772,620	10,941,772,415	2,479,487,865	△2.6%

(나) 예산 전용·이월

- <예산 전용> 총 33건 7억 5,968만 6천원을 전용하여 전년 대비 7건 3억 1,903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세출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산 전용은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인만큼 불가피한 경우 등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
- <예산 이월> 명시이월 8건 42억 2,338만 490원, 사고이월은 25건 99억 1,945만 7,075원으로, 전년대비 15건 109억 4,177만 2,415원이 증가 하였음. 예산이 이월될 경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주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예산 편성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의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이월 사업비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예산 이월 현황

(단위 : 원)

구분	2013년		2012년		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33	14,142,837,565	18	3,201,065,150	15	10,941,772,415
명시이월	8	4,223,380,490	4	771,986,000	4	3,451,394,490
사고이월	25	9,919,457,075	14	2,429,079,150	11	7,490,377,925

(3) 특별회계

- 2001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시 종전의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함에 따라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법명을 개정하였음. 따라서, 현행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명칭 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 기금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자치구 기금 명칭 현황

계	의료급여기금	의료보호기금	의료급여	의료기금	비고
25	17	6	1	1	

(4) 예비비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해 당해연도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은 예산 28억 7,878만 2천원 중 14억 943만 6,240원을 지출하여 집행율은 49.0%임. 최근 예비비 집행비율을 살펴보면 2009년도 12.1%, 2010년도 46.7%, 2011년도 57.4%, 2012년도 90.2%로 예비비 사용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향후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 현황

(단위 : 원)

구 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편성액	3,248,318,000	2,754,926,000	2,904,360,000	2,587,875,000	2,878,782,000
집행액	393,308,340	1,287,883,130	1,669,569,582	2,335,538,248	1,409,436,240
집행비율	12.1%	46.7%	57.4%	90.2%	49.0%

(5) 기금

(가) 기금관련 조례 정비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종기일 이전에 존속기한 연장여부를 엄격히 검토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우리 국가 운용중인 기금은 모두 16개로,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3개이고, 필요에 의해 임의 설치된 기금은 13개이며, 임의 설치 기금 중 아직까지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3개 기금임.
- 따라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기금은 조속히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기타 존속기한이 정해진 기금의 조례도 관련 조항 대부분이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명기하고 있으나 향후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하여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의 기금 조례와 같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0000년 00월 00일 까지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관련 조례는 있으나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금의 조성 또는 조례의 존치 및 폐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